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기간 - 서비스 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계약해지 의사

없이 유효기간이 만료될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센터)와 서비스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또한, 대상자의 권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가)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구분						
재가급여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한도액	2,512,900원	2,331,200원	1,528,200원	1,409,700원	1,208,900원	676,320원

나) 2026년 (방문요양) 1회 방문 당 급여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시간을 말한다.

구분								
수가(단위:회당/원)								
방문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급여비용(원)	17,450원	25,320원	34,120원	43,430원	50,640원	57,020원	63,530원	70,080원

※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2)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경대상자는 보험료 순위 비율에 맞춰 각각 100분의 6과 100분의 9로 한다.

가) 2026년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비율

구분				
기초수급권자	기타 의료 수급권자	차상위의료급여건강보험 자격전환자(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일반
0%	6~9%			15%

3)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를 가산한다.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를 가산한다.

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심야30%를 가산한다.

라)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라. 이용료 등 수납 -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마.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바.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의무

가) 이용자에게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

바)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 의무

2) 권리

가)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다)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라)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마)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및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바)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사. 계약해지 및 정지

1) 계약해지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

할(될) 수 있다.

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

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폭력성, 성격장애 등)

마)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

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바) 이용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사)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2) 계약 정지 - 일시적인 병원입원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실 때 부모사랑방문요양센터(031-858-5692)